의 안 번 호

1740

##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,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3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5. 3.(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5. 13.(목)

#### 2. 제안이유

○ 우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되어,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, 새로 이전한 신청사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○ "【별표】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,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(제2조 관련)" 중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"울산광역시 중구 당산5길 41(우정동)"을 "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30(우정동)"으로 변경

4. 근거법규: 「지방자치법」제6조

#### 5. 검토의견

○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반영으로 상위법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,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근 거 법 규

### 지방자치법

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면·동은 제 4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(行政面)·행정동(行政洞)을 말한다.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